

2016.06.22

2016년 제3회 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관세청은 **201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 'Skin care cosmetic' 외 10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 하였습니다.

결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여주세요.

▶ 결정사항

【결정 16-03-001】

1. 품명 : Vaccines for human medicine; 온코타이스 주;
OncoTICE® 12.5mg/ml, 1 vial ; U.S.A
2. 결정세번 : 3002.20-0000

[결정 16-03-002]

1. 품명 : Skin care cosmetic; LIQUID BODY LUFRA;
18102717; U.S.A
2. 결정세번 : 3304.99-1000

2016.06.22

[결정 16-03-003]

1. 품명 :

- ①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hydroxide with cobalt doping; Ni_{0.845}/Co_{0.155} (OH)₂; CHINA
- ②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hydroxide with manganese doping; Ni_{0.82}/Mn_{0.18} (OH)₂; CHINA

2. 결정세번 : 2853.00-9000

[결정 16-03-004]

1. 품명 : Bracket LCD For Cellular phone; GH98-32029A;
R.KOREA

2. 결정세번 : 8517.70-1022

[결정 16-03-005]

1. 품명 : ASSY CASE REAR; SM-J200G; R.KOREA

2. 결정세번 : 8517.70-1022

[결정 16-03-006]

1. 품명 : ASSY CASE BATT; SM-J200G; R.KOREA

2. 결정세번 : 8517.70-1029

2016.06.22

[결정 16-03-007]

1. 품명 :

- ①, ②번 물품 : 5oz Silver bar pamp suisse (fortuna)
- ③~⑧번 물품 : 1 oz Gold bar - pamp suisse

2. 결정세번 :

- ①, ②번 물품 : 7114.11-9000
- ③ ~ ⑧번 물품 : 7114.19-9000

[결정 16-03-008]

- 1. 품명 : Gear VR; SM-R322; R.KOREA
- 2. 결정세번 : 8543.70-9090

[결정 16-03-009]

1. 품명 :

- ① Chemical preparations; GRAPHITE POWDER; CHINA
- ② Chemical preparations; ARTIFICIAL GRAPHITE; CHINA

2. 결정세번 : 3824.90-9090

[결정 16-03-010]

- 1. 품명 : Receiver and Motor assy; GH59-11444A; CHINA
- 2. 결정세번 : 8517.70-1029

[결정 16-03-011]

- 1. 품명 : Gesture Sensor; GH59-13411A; CHINA
- 2. 결정세번 : 8517.70-1029

【결정 16-03-001】

1. 품명

Vaccines for human medicine; 온코타이스 주; OncoTICE® 12.5mg/ml,
1 vial ; U.S.A

2. 물품설명

○ 개요

- BCG*(TICE® 균주), 부형제(유당), 안정제(아스파라긴수화물, 시트르산 수화물 등), 암모니아수 등으로 구성된 담황색 고상(182.6mg)을 유리병 (Vial)에 소포장하여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물품

* BCG(Bacille de Calmette-Guerin vaccine): 칼메트와 게랭에 의해 개발된 백신으로 소 결핵균에서 독성을 제거한 것 < 출처 : 미생물학(아카데미서적) >

- 용도 : 방광암 치료용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3002.20-0000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생략) ...'이 분류되나,
 - 제3004호 용어에서 '제30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300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002.20 소호에는 '인체의약용의 백신'을 특개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백신은 미생물에서 유래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를 생리식염수나 오일(리포백신) 또는 기타 매체에 현탁한 제제를 말한다. ... (중략) ... 이들 백신의 대부분은 특정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표적으로 하고 있으며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인체의 방광암 치료를 위해 소 결핵균에서 제조된 BCG(TICE[®] 균주)를 부형제(유당), 안정제(아스파라긴수화물, 시트르산수화물 등) 및 암모니아수 등으로 조제한 본건 물품은 제3002호의 백신에 해당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인체의약용의 백신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002.2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6-03-002】

1. 품명

Skin care cosmetic; LIQUID BODY LUFRA; 18102717; U.S.A

2. 물품설명

○ 개요

- 정제수 약 76.7%, 알로에베라잎즙 7%, 부틸렌글리콜 3.25%, 글리세린 약 2.93%, 소듐C14-16올레핀설포네이트 1.88%, 암모늄라우레스설페이트 1.82%,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0.6%, 라우라미이드엠이에이 0.3% 등으로 조제된 투명 점액상을 황갈색 미세입자(호두껍질가루 3%)와 혼재하여 플라스틱 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50ml)
- 용도 : 각질 제거, 피부 보습, 피부 세정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3304.99-1000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 예시 품목으로 "미용크림·쿨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 크림·스킨푸드(별꽃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 주름제거 및 피내 주사용 젤(히알루론산 포함) : 여드름방지용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cleanse)에 쓰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각질 제거, 피부 보습 및 피부 세정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 ① 각질 제거와 피부 보습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의 함량이 피부 세정 효과를 나타내는 계면활성제 성분의 함량보다 많은 점, ② 현품상 본건 물품을 'EXFOLIATING CLEANSER(각질제거용 클렌저)'로 표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건 물품은 각질 제거와 피부 보습이 주기능인 물품이므로 제3304호의 '기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304.99-1000호에 분류함

【결정 16-03-003】

1. 품명

①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hydroxide with cobalt doping; Ni_{0.845}/Co_{0.155} (OH)₂; CHINA

②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hydroxide with manganese doping; Ni_{0.82}/Mn_{0.18} (OH)₂; CHINA

2. 물품설명

○ 개요 및 용도

- ①번: 녹색 분말상의 Nickel Cobalt Hydroxide [Ni_{0.845}/Co_{0.155}(OH)₂]

②번: 암갈색 미세 분말상의 Nickel Manganese Hydroxide [Ni_{0.82}/Mn_{0.18}(OH)₂]

- 용도 :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제조 주원료



< ①번 물품 이미지 >



< ②번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2853.00-9000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을 이 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28류 총설에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란 그 조성이 원소들의 상수비로 규정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분자 종류(예: 공유 또는 이온)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일정상수비(Ni 0.845와 Co 0.155, Ni 0.82와 Mn 0.18)와 일정한 구조식[①번: $\text{Ni}_{0.845}/\text{Co}_{0.155}(\text{OH})_2$, ②번: $\text{Ni}_{0.82}/\text{Mn}_{0.18}(\text{OH})_2$]을 가지고 있으므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해당됨
- 다만, 본건 물품은 금속(Ni, Co)과 염기의 특징인 “수산화(OH)기”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무기산의 염으로 볼 수 없어 제2842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2853호에는 “그 밖의 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른 호에서 명백히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은 무기화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물품 ①과 ②를 ‘그 밖의 무기화합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853.0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6-03-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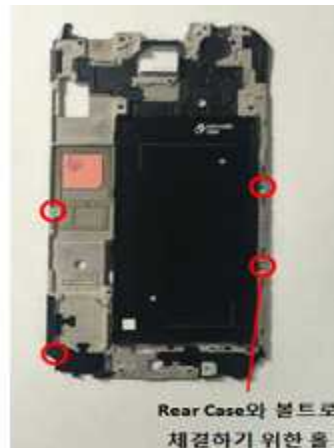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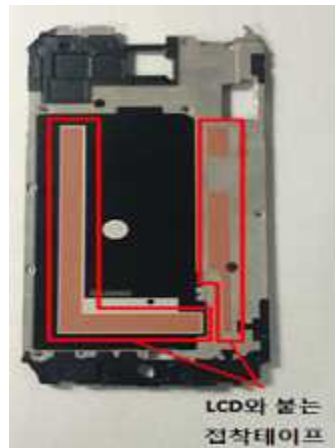
1. 품명

Bracket LCD For Cellular phone; GH98-32029A; R.KOREA

2. 물품설명

○ 개요 및 기능

- 특정 휴대폰(갤럭시 S5)에 장착되도록 제조된 물품
- 디스플레이, Main PBA, 카메라 모듈, 리시버 등의 물품이 휴대폰 내 특정 위치에 정확히 장착될 수 있도록 ① 휴대폰의 기본 뼈대 역할, ② 내부 부품 보호, ③ LCD 흔들림 방지 및 위치를 지지·고정하는 기능 수행
- 재질 및 구성비 : 알루미늄(87%), 플라스틱(13%)
- 휴대폰 결합순서 : ① 디스플레이 + ② 본건 물품 + ③ Main PBA, 배터리 등 + ④ REAR COVER(CASE) + ⑤ 배터리 커버



< 물품 이미지 : 앞면(좌), 뒷면(우) >

3. 결정세번

8517.70-1022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사.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의 제8302호 분류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본건 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제 물품으로,
 -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등의 부품이 특정 위치에 장착되도록 휴대폰의 기본 뼈대 구성 및 장착 공간을 제공하며, LCD의 흔들림 방지와 각종 부품을 지지·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 휴대폰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an essential part)을 구성하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범용성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3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 (생략)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개정 시 HSK 8517.70-1022호의 용어인 ‘케이스’를 ‘휴대폰에 각종 부품이 장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몸체’로 정의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제8517호의 ‘전화기 부분품(케이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케이스)’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1022호에 분류함

【결정 16-03-005】

1. 품명

ASSY CASE REAR; SM-J200G; R.KOREA

2. 물품설명

○ 개요

- 특정 휴대폰(갤럭시 J)에 장착되도록 가공되었으며, 본건 물품 전면부와 Bracket 등의 물품을 결합할 수 있도록 측면이 형성된 플라스틱제 물품
- 블루투스·와이파이 안테나, 휴대폰 전파 수신 안테나 및 카메라 윈도우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카메라 모듈, 회로기판, 배터리 등의 휴대폰 부품이 정확히 장착되도록 부품별 모양에 맞추어 홈이 파여 있음

○ 기능 및 용도

- 휴대폰 내부 부품 보호 및 휴대폰 부품의 장착 공간 제공

○ 휴대폰 결합순서

- ① 디스플레이 + ② Bracket + ③ 카메라모듈, 회로기판, 배터리 등 + ④ 본건 물품 + ⑤ 배터리 커버



< 물품 이미지 : 전면(좌), 후면(우) >

3. 결정세번

8517.70-1022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블루투스·와이파이 안테나 및 카메라 윈도우 등이 내장되었으며 특정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조된 물품으로,
 - 카메라 모듈, 회로기관, 배터리 등의 휴대폰 부품이 특정 위치에 장착되도록 부품별 형태에 맞추어 내부가 형성되어 있고, 휴대폰 내부 부품 보호 및 휴대폰 부품의 장착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개정 시 HSK 8517.70-1022호의 용어인 ‘케이스’를 ‘휴대폰에 각종 부품이 장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몸체’로 정의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제8517호의 ‘전화기 부분품(케이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케이스)’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1022호에 분류함

【결정 16-03-006】

1. 품명

ASSY CASE BATT; SM-J200G; R.KOREA

2. 물품설명

○ 개요

- 특정 휴대폰(갤럭시 J)에 장착되도록 가공되었으며, 열을 방출하는 Sheet가 부착되어 있고, 후면에는 로고가 인쇄된 플라스틱제 물품

○ 기능 및 용도

- 휴대폰 뒷면에 장착되어 내부 부품과 배터리를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

○ 휴대폰 결합순서

- ① 디스플레이 + ② Bracket + ③ 카메라모듈, 회로기판, 배터리 등 + ④ REAR CASE + ⑤ 본건 물품



< 물품 이미지 : 전면(좌), 후면(우) >

3. 결정세번

8517.70-1029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물품 내부에 열을 방출하는 Sheet가 부착되었으며, 특정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조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 휴대폰의 뒷면에 장착되어 내부 부품 및 배터리를 보호하며 휴대폰의 외관을 형성하는 물품이므로 전화기의 필수 구성요소로 볼 수 있음
 - 다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개정 시 HSK 8517.70-1022호의 용어인 ‘케이스’를 ‘휴대폰에 각종 부품이 장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몸체’로 정의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케이스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8517호의 ‘전화기 부분품(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기타)’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1029호에 분류함

【결정 16-03-007】

1. 품명

- ①~②번 물품 : 5oz Silver bar pamp suisse (fortuna)
- ③~⑧번 물품 : 1 oz Gold bar - pamp suisse

2. 물품설명

○ 개요

-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실버(Ag 99.9%) 바와 골드(Au 99.99%) 바로서 보증서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카드에 블리스터 포장되어 있는 물품
- 앞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행운의 여신(Fortuna)이 압인되어 있으며, 뒷면은 실버(골드) 바 제조사의 상호, 중량, 금속의 종류, 순도, 함량 확인 마크, 일련번호가 압인되어 있음

○ 용도

- 현금대용의 가치저장 수단용
- 소규모 생산업자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 현물 상품 투자용, 선물용

구분	품명 등	< 물품 이미지 >
① 번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5oz silver bar pamp suisse (fortuna) · 순도: 은(Ag) 99.99% · 원산지: Swiss · 54mm X 85.5mm, 두께 3.25mm 	

구분	품명 등	< 물품 이미지 >
② 번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100 gram silver bar pamp suisse-fortuna • 순도: 은(Ag) 99.99% • 원산지: Swiss • 35mm X 60mm, 두께 4.53mm 	
③ 번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1 oz gold bar - pamp suisse • 순도: 금(Au) 99.99% • 원산지: Swiss • 24mm X 41mm, 두께 1.66mm 	
④ 번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1 gram gold bar - pamp suisse • 순도: 금(Au) 99.99% • 원산지: Swiss • 8.9mm X 14.7mm, 두께 0.4mm 	
⑤ 번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25*1 gram gold bar pamp suisse multigram + 258 • 순도: 금(Au) 99.99% • 원산지: Swiss • 6.0mm X 9.5mm, 두께 1.1mm 	

구분	품명 등	< 물품 이미지 >
⑥번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2.5gram gold bar - pamp suisse · 순도: 금(Au) 99.99% · 원산지: Swiss · 11.5mm X 19mm, 두께 0.6mm 	
⑦번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5 gram gold bar - pamp suisse · 순도: 금(Au) 99.99% · 원산지: Swiss · 13.1mm X 22.1mm, 두께 0.9mm 	
⑧번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10gram gold bar - pamp suisse · 순도: 금(Au) 99.99% · 원산지: Swiss · 15.8mm X 26.5mm, 두께 1.25mm 	

3. 결정세번

- ①, ②번 물품 : 7114.11-9000
- ③~⑧번 물품 : 7114.19-9000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10호에서는 “제7114호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흡연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사무용·종교용 물품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7114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E) 기타의 가정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 : 예를 들어, 흉상·소상 및 기타의 실내장식용의 상, 보석상자, 테이블 중앙 장식품·화병·장식용 화분, 그림액자, 램프·가지장식이 달린 촛대·촛대·샹들리에, 벽난로의 장식용의 접시와 쟁반·메달과 메달리언(개인 장식품의 것은 제외), 운동용 트로피, 향수 버너 등”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대형 골드(실버) 바를 소형 바로 구조한 후 특정 크기·두께로 제작한 뒤 광택·건조·압인과정을 거쳐 블리스터 포장한 제품으로,
 - ① 물품의 표면에 특별한 무늬가 압인되어 있는 점, ② 추가 가공없이 수입된 형태로 거래되는 점, ③ 제7114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메달과 제조방법 등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제7114호의 ‘금(은) 세공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①, ②번 물품은 ‘은 세공품’으로 보아 HSK 7114.11-9000호로, ③~⑧번 물품은 ‘금 세공품’으로 보아 HSK 7114.19-9000호에 분류함

【결정 16-03-008】

1. 품명

Gear VR; SM-R322; R.KOREA

2. 물품설명

○ 개요

- 삼성 스마트폰(노트 4 등)에 전용되는 고글형태의 헤드셋으로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동영상·게임 콘텐츠 등을 3D 형태로 재현하여 사용자가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주는 기기

* VR(Virtual Reality) : 탱크·항공기의 조종훈련이나 게임 등과 같이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실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사이버 공간에 가상으로 만들어 체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드는 것

- (사용 방법) 본건 물품 전면부(렌즈 부착 부분)에 스마트폰을 장착한 후 커넥터로 본건 물품과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안경처럼 착용한 뒤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영화·게임 콘텐츠 등을 감상

○ 구성요소 별 기능

- ① 볼륨조절버튼 : 기기와 연결된 특정 스마트폰의 볼륨 조절
- ② Micro USB 커넥터 :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연결부
- ③ 터치패드 : 손가락 터치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상의 커서를 조정
- ④ 백(back) 버튼 : 뒤로 가기 / 취소 기능 수행
- ⑤ 렌즈 : 고배율의 광각 볼록렌즈로서 휴대폰에서 보여지는 화면을 시각적 왜곡을 통해 입체영상으로 보여주게 함
- ⑥ Focus 휠 : 스마트폰과 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사용자의 눈에 맞게 초점을 조절하는 기능 수행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43.70-9090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43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 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한편, HS해설서 제8479호에서는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를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특정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동영상·게임 콘텐츠 등을 3D 형태로 재현하여 사용자가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주는 기기로,
 - 기존 3D 입체안경이나 모니터와 달리 단순히 렌즈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화면을 3차원 영상으로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 본건 물품에 내장된 센서(자이로센서, 가속도센서 등)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에 감지하여 화면을 360°로 이동·변환시킴으로써 사용자가 마치 주변 상황 및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물품으로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기능이 휴대폰과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이므로 제8543호에 분류할 수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결정 16-03-009】

1. 품명

- ① Chemical preparations; GRAPHITE POWDER; CHINA
- ② Chemical preparations; ARTIFICIAL GRAPHITE; CHINA

2. 물품설명

○ 개요

- ①번 물품 : 천연흑연 표면을 피치로 코팅처리하고 1차(1,000~1,500℃), 2차 소성(3000℃이상)과정을 거친 후 인조흑연(약 5%)을 혼합한 흑색 분말
- ②번 물품 : 천연흑연을 분쇄, 순화하여 표면을 피치로 코팅처리하고 소성(약 1,000℃)한 후 인조흑연(3%)을 혼합한 흑색의 분말
- 용 도 : 이차전지 제조용(리튬이온 전지 음극 활물질 재료)

○ 제조공정

- ①번 물품 : 천연흑연 → 인상흑연 → 구형화 → 피치코팅 → 소성 → 흑연화 → 혼합(인조흑연 5% 내외) → 1차 시빙 → 탈철 → 2차 시빙 → 포장/검사
- ②번 물품 : 천연흑연 → 인상흑연 → 분쇄 → 순화 → 건조 → 코팅 → 소성 → 혼합(인조흑연 3% 첨가) → 완제품



< 물품 이미지 : ①번 물품(좌), ②번 물품(우) >

3. 결정세번

3824.90-9090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이나 조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천연흑연에 콜타르피치를 코팅하여 열처리한 후 인조흑연을 혼합한 본건 물품은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에 해당됨
- 참고로, HS 해설서 제3801호에서는 ‘인조흑연의 제조방법으로 코크스 등을 흑연화가 확보되도록 충분한 고온(2,500℃부터 3,200℃까지)으로 가열하여 만든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본건 물품은 천연흑연 표면을 피치로 코팅처리한 후 고온 가열한 것으로 결정구조가 변화하는 ‘흑연화’ 공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는 바 제3801호의 인조흑연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안전 16-03-010】

1. 품명

Receiver and Motor assy; GH59-11444A; CHINA

2. 물품설명

○ 개요

- 특정 휴대폰에 조립되어 사용되며 는 모듈형태의 물품
- 리시버(Receiver), 마이크, 이어잭(Ear-jack), 진동 Motor, Connector 등은 인쇄회로기판(RFPCB)으로 연결되었으며, 리시버, 마이크, 이어잭과 모터는 각각의 기능을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

○ 구성요소 별 주요 기능

- ① Receiver : 입력된 전기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통화 시 상대방의 목소리를 음성신호로 출력해주는 기능을 수행
(12.1mm×7.1mm×3.47mm, 유효주파수 대역 : 300hz~3.4khz)

※ 벨소리 및 음악 등 수화음 외의 음향신호는 별도의 스피커를 통해 출력

- ② 마이크 : 스피커폰(한뼘통화 기능)으로 통화 시 목소리를 입력하거나, 동영상 촬영 시 주변 소리를 입력하는 기능을 수행(외부의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상대방에게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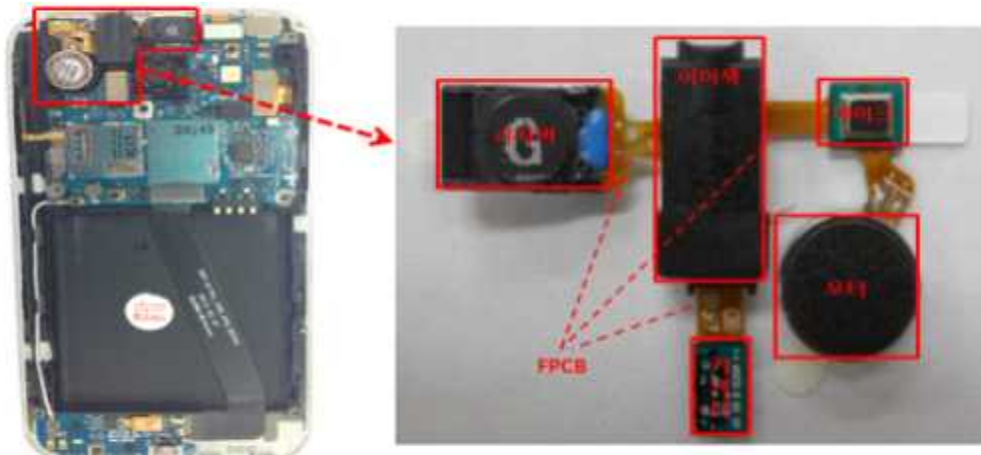
※ 동 마이크는 휴대폰 상단에 설치되며, 일반 통화용의 마이크는 휴대폰 하단에 별도 설치

- ③ Ear-jack : 이어폰 플러그가 삽입되는 전기 접속용 단자

- ④ 진동 Motor : 코일과 자석으로 구성되어 전류가 인가되면 기계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선형진동모터로서 휴대폰 에티켓 모드 시 사용

- ⑤ Connector : 전기적 접속을 유지하는 장치

- ⑥ RFPCB : 절연회로기판으로 부품을 배치하고 상호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



< 물품 이미지 및 장착 위치 >

3. 결정세번

8517.70-1029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리시버(Receiver), 마이크, 이어잭(Ear-jack), 진동 모터 및 Connector 등이 인쇄회로기판으로 연결된 모듈 형태의 물품으로,
 - 특정 휴대폰에 장착되어 사용되도록 제조되었으며, 상대방 목소리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등 휴대폰의 기능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므로 ‘휴대폰의 부분품(기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기타)'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1029호에 분류함

【결정 16-03-011】

1. 품명

Gesture Sensor; GH59-13411A;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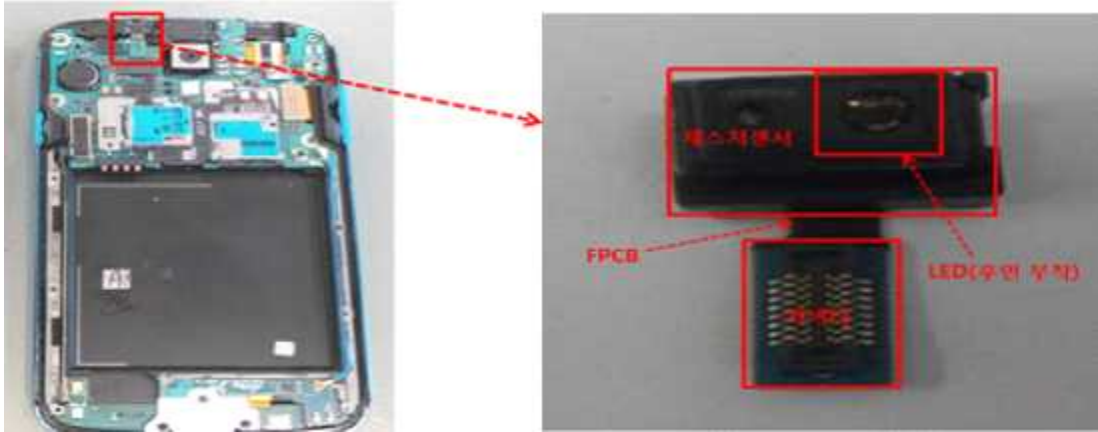
2. 물품설명

○ 개요

- 특정 휴대폰에 조립되어 사용되는 모듈형태의 물품
- Gesture 센서, IR LED, Connector 등이 인쇄회로기판(FPCB)으로 연결되었으며, Gesture 센서와 IR LED는 각각의 기능을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

○ 구성요소 별 주요 기능

- ① Gesture 센서 : LED(발광부)와 센서(수광부)가 하나의 칩 형태로 구성
 - LED에서 적외선을 발광하면 손에서 반사되는 적외선을 센서에서 받아들여 사용자의 제스처를 인식하는 기능 수행
 - ※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손동작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화면을 작동
- ② IR LED : 외부기기로의 신호 전달을 위한 적외선 발생장치
 - TV 리모컨의 적외선 발생장치와 동일하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적외선 센서가 탑재된 TV, 셋톱박스 등을 제어하는 리모컨 기능 수행
- ③ CONNECTOR : 전기적 접속을 유지하는 장치
- ④ FPCB : 절연회로기판으로 부품을 배치하고 상호 전기적으로 연결



< 물품 이미지 및 장착 위치 >

3. 결정세번

8517.70-1029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Gesture 센서, IR LED 및 Connector 등이 인쇄회로기판 (FPCB)으로 연결된 모듈 형태의 물품으로,
 - 특정 휴대폰에 장착되어 사용되도록 제조되었으며, 화면의 터치없이 휴대폰 기능을 수행하거나 적외선 센서가 탑재된 기기를 제어하는 등 휴대폰에 고안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므로 ‘휴대폰의 부분품(기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기타)'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1029호에 분류함